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021.02.10.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본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총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세칙 해석의 기준】 ① 본 세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및 본 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본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63조(회칙 및 세칙의 해석)의 절차에 따라 해석을 확정한다.

제4조【대표자 및 각 기구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집행부 등의 자치기구는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5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하며, 각 자치기구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①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5조의 적합한 본회의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 여부 확인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 교학처를 통해 확인한 등록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제7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에 한하여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1. 후보자 등록 시 현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정회원인 자
2.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2.7이상인 자
3. 학칙을 위반하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및 본 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않은 자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목적】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둔다.

제9조【권한 및 책임】 선거와 관련된 모든 권한 및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다.

제10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이행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 ·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1. 선거 공고문 게시
2. 후보자 접수 및 등록
3. 정견발표 주관 및 후보자 토론회 주관
4. 후보자 선거운동 활동관리
5. 부정선거 감시
6. 투표 및 개표 진행
5.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제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 전공학생회장 5명을 필수로 구성한다.

② 필수 구성원의 추천을 통해 각 학과의 비율을 비슷하게 구성한 10명 이내의 인원을 추가로 둔다.

③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결성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공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여부를 따진다.

제12조【위원장】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통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13조【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초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결성되면 총학생회장은 명단을 학교 당국에 넘긴 후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제14조【해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발표한 후 해산한다.

② 반복한 선거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투표를 통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임기를 금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15조【선거 일정】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일정은 선거공고, 추천 및 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를 14일 이내, 추천 및 등록기간을 14일 이내, 선거운동기간을 14일 이내, 투표일을 하루 이내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전염병, 천재지변 등과 같이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시행한다.

1. 선거일정 변경 사유
2. 변경된 선거일정

제16조【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기 전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해야 한다.

1. 확정된 선거 일정
2. 후보 등록 마감 시각
3.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 파일 종류

제2절 추천 및 후보 등록

제17조【추천】 ① 후보자는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추천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③ 추천인 명부는 추천인의 자필 작성 및 자필서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후보자는 명부 작성 가운데 목적을 추천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추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추천인은 중복 추천이 가능하다.

제18조【후보자 자격】 ① 후보자는 총학생회장 1인, 부총학생회장 1인으로 구성한다.

② 편입생 및 초과 학기자는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9조【후보 등록 신청】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위한 각 호는 제출된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소속 주임교수 후보등록 추천서 1부
2. 소속 학회장 후보등록 추천서 1부
3. 투 · 개표 참관인 동의서 1부
4. 후보 추천인 150명 이상의 명부
5. 후보자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6. 후보자 공약서 1부

제20조【후보 등록 심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한 선거 일정에 맞도록 회의를 열어 제출된 서류 · 파일을 검토하고 제7조(피선거권)와 제18조(후보자 자격)의 조건에 부합한지 심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7조와 제18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자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③ 후보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등록된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21조【후보 등록】 제20조 제1항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제22조【후보자의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 등록 마감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의 공석의 경우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의 의거하여 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며, 그 외의 직위인 경우 각 자치기구의 결정권자들의 협의 따라 결정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2. 운영위원회 위원
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4. 전공학생회장 및 부전공학생회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때는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하였음을 공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에 동일한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려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② 후보자 사퇴에 대한 공고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게시한다.

제24조【후보자 등록 동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심사가 통과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25조【선거운동정신】 후보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며 상대 후보자를 존중하며 비방하지 않는다.

제26조【선거운동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자 공고가 게시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제15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기간 내에 진행한다.

제27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현재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2.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
3.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4. 현재 전공학생회장 및 부전공학생회장

제28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며, 후보자 임의로 제작해야 한다.

1. 개인유세
2. 정견발표 및 공청회 참가
3. 선전물(포스터, 현수막, 유인물 등)의 게시 · 배포
4. SNS를 통한 선전물(포스터, 동영상 등)의 업로드
5.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29조【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후보자 또는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 도우미들이 선거운동 일환으로

별이는 선거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후보자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개인유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회원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정견발표】 ① 정견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학처와 교목실에 채플 및 수업시간 양해 등 협조를 통하여 진행되며, 채플 직후 각 후보별로 발표한다.

- ② 후보자는 정견발표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③ 정견발표 형식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바에 따라 진행되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른다.
- ④ 정견발표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 ⑤ 정견발표에 사용할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31조【공청회】 ① 공청회는 참여인원, 방법, 장소 및 시간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당국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 ② 후보자는 공청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③ 공청회의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른다.
- ④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사회자와의 질의응답, 참석자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 ⑤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⑥ 공청회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32조【선전물의 사전허가】 ① 후보자는 선거 관련 모든 선전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할 수 있다.

- ②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게시·배포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③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선전물이 적발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게 주의 혹은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선전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 ④ 선전물의 SNS 업로드와 같은 경우 선거관리위원장과 총학생회장의 협의에 따라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SNS에 업로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전공학생회장과의 협의에 따라 각 학과에 전달할 수 있다.

제33조【선거자금】 ①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에게 요청하여 총학생회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47조에 제2항에 의거하여 관리자가 관리하되 후보자는 「한국성서대학교 재정부운영세칙」에서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인근 지역의 상점 및 관계 기관의 후원은 후보자의 능력 여하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제한을 두지 않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절 징계

제34조【징계】 징계라 함은 본 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후보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주의, 경고, 후보 자격 박탈로 나뉜다.

② 주의가 3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주의 3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3회는 소멸한다.

③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자격 박탈사유와 발생시점을 논의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후보 자격 박탈을 공고한다.

④ 제3항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후보 자격 박탈의 집행을 유예한다. 단, 주의 이상의 징계가 추가되면 즉시 후보 자격 박탈을 공고한다.

⑤ 주의, 경고에 대한 여부는 상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한다.

제36조【징계의 의결·취소】 ① 징계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자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자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투표

제37조【투표방법】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염병,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수한 투표방법을 진행할 수 있다.

제38조【투표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소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투표시간 동안 투표소를 관리·감독하는 자는 최소 한 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그 외의 인원에게도 임시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투표일·투표시간】 ① 투표는 하루 동안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염병,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7일 이내로 시행한다.

③ 투표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제39조【투표소】 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 당국의 결정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 좌석 등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기표소의 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되, 모든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해야 한다.

제40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단일 후보자일 경우 후보자의 성명, 다수 후보자일 경우 후보 기호와 일치하도록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이중으로 도장이 찍히거나 후보자 간 중간에 찍힐 경우 무효표 처리 되며, 기표도장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모두 무효처리 한다. 이 외의 유효표·무효표를 가늠하기 위한 방법은 국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1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관리요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서명
3. 투표관리요원의 투표용지 확인
4. 투표용지 배부
5. 기표 및 투표

제42조【본인 확인】 ① 선거인은 투표관리요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학증명서로도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해서는 안 된다.

신분 확인은 한국성서대학교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LMS 로그인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제43조【기표 · 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한 조를 선택하거나 찬성과 반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투표용지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6절 개표

제44조【개표 시작】 개표는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모든 개표참관인의 출석이 인정되었을 경우 진행된다.

제45조【개표소】 개표소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교학처 내부가 개표소가 된다.

제46조【개표참관인】 ① 개표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의 참관인, 교학처 직원 최소 각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④ 무표투표 발생 시 개표참관인의 동의하에 무효처리할 수 있다.

제47조【투표용지 · 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이의 제기 등의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투표용지 · 선거인명부 등을 금년 총학생회장에게 인수하여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절 당선

제48조【당선의 기준】 ① 단일 후보자인 경우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자 중 2/3 이상이 찬성을 했을 경우 당선자로 한다.

② 다수 후보자인 경우 개표결과 최다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 ·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1. 단일 후보자인 경우 기준을 미달했을 때
2. 다수 후보자인 경우 최다 득표수가 같을 때

제48조【당선공고】 ①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참관인 전체의 확인절차를 거친다.

②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익일 공고한다.

1.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학과, 학년

2. 최종 투표율

③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재투표 · 결선투표가 확정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익일 공고한다.

1. 재투표 · 결선투표 진행 사유

2. 최종 투표율

④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재투표 · 결선투표 포기가 확정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익일 공고한다.

1. 재투표 · 결선투표 미진행 사유

2. 최종투표율

제49조【임기】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10조를 따른다.

제8절 재투표 및 결선투표

제48조【재투표】 ① 개표결과를 통해 단일 후보자가 기준을 미달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여부를 물었을 때 후보자가 재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재투표임에도 제48조 제1항에 기준을 미달했을 경우 총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논의한다.

제49조【결선투표】 개표결과를 통해 다수 후보자의 최다 득표수가 같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한 때로부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세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본 세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요구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운영위원회에게 알릴 수 있다.